|  |
| --- |
| **게임 프로젝트 3D 그래픽**  **외주 계약서** |

**외 주 금 액 : 일금 100,000,000,000 원정 (VAT 별도)**

**외 주 범 위 : 3D 그래픽**

**외 주 기 간 : 2015. 11. 13 ~ 2015. 12. 23**

**갑 : 파이온**

**을 : 박종수**

**2015. 11. 12**

|  |
| --- |
| **게임 프로젝트 3D 그래픽 용역 계약서** |

**본 계약의 당사자인 파이온 (이하 “갑”)와 박종수 (이하 “을”)는 “갑”이**

**개발중인 게임 프로젝트 3D 그래픽 (이하 “프로젝트”) 에 관한 3D 그래픽 용역 계약(이하 “본 계약”)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.**

**제1조(목적)**

**1. (목적) 본 계약의 목적은 “프로젝트”에 필요한 3D 그래픽을 제작하는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.**

**2. (개별계약) “개별계약”이란 “본 계약” 이외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추가 계약을 말하며, 개발 계약에서 합의된 이외의 사항은 “본 계약”에 따르고 “본 계약”과 개별 계약간의 상이한 사항은 “개별계약”에 따른다.**

**제2조(용어정리)**

**1. “프로젝트”란 “갑”이 기획하고 개발하는 “게임 프로젝트 3D 그래픽” 을(를) 말한다.**

**2. “효력 발생일” 이란 “갑”과 “을”이 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.**

**3. “지적 재산” 이란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특허, 상표, 서비스표시, 거래 및 사업명, 로고, 슬로건, 디자인과 저작권, 노하우, 기밀정보 등 기타 유사 권리를 말한다.**

**4. “해당 자료” 디자인/개발 명세서, 지원 프로그램, 관련 기술집(그림 또는 텍스트)등 “프로젝트”에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용자 문서를 말한다.**

**5. “산출물” 이란 “갑”이 제시한 “개발 내역”에 대해 “을”이 수행한 결과물을 말한다.**

**제3조 (공급 조건)**

**1.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물품의 제작비용으로 일금 100,000,000,000원을 제4조 (계약금과 개발 일정)에 의거하여 지급한다.**

**2.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원활한 게임 프로젝트 3D 그래픽 위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개발기간은**

**계약체결일로부터 1 월 1일 까지로 한다.**

**3.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발지연으로 ②항의 개발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**

**제5조 (지체 상금)에 의거하여 ①항의 비용에서 공제한다.**

**4. “갑”의 추가적인 요청으로 인한 개발지연 시, 상호 협의하여 개발 완료일을 조정한다.**

**제4조(계약금과 개발 일정)**

**1. “갑”은 “을”에 대해 본 건 업무의 위탁료 로서 총 금액 100,000,000,000 원(VAT별도)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**

1. **선 금 (30%) : 계약 후 7일이내 일금 10,000원 (VAT별도)**
2. **중도금 (30%) : “개발 내역”중 캐릭터 3종 완료시 개발 완료 후 7일이내 일금 10,000 원 (VAT별도)**
3. **잔 금 (30%) : 납품 완료 후 7일이내 일금 10,000원 (VAT별도)**

**2. 개발 일정 : 2015년 11월 13일 ~ 2015년 12월 13일 (약 1개월)**

**제5조(지체 상금)**

**1. 제작된 “3D 그래픽”의 납품 기한은 4조 2항에 따른다.**

**2. “을”이 납기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키지 못한 경우, 이를 즉시 “갑”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.**

**3. (지체 상금) “을”은 전쟁, 폭동, 홍수, 지진 등 불가항력적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납기를**

**지체한 경우 매 1일에 총 제작비의 1/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서 즉시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.**

**제6조(재위탁의 금지)**

**“을”은 사전에 “갑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본 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.**

**제7조(일반 사항)**

**1.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개발 관련 “해당 자료” 협조 및 제공을 하여야 한다.**

**2. “갑”은 계약 이행과 관련 세부 일정 등을 정함에 있어 “을”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야 한다.**

**3. “을”은 “본 계약” 조건과 “개발 내역”을 반영하여 용역 계약을 이행한다.**

**4. “갑”과 “을”은 계약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이나 용역 수행상 필요한 경미한 추가 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가급적 용역 범위내에서 수행토록 협력한다.**

**제8조(제작 절차)**

**“갑”이 의뢰한 “3D 그래픽”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.**

**1. 자료의 제공**

**“갑”은 “프로젝트”에 사용 될 “해당 자료”를 “을”에게 제공하고, “갑”의 승인에 따라 “을”은 제작에 착수 한다. 제작 기간의 착수 시점은 “갑”이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.**

**[해당 자료 목록]**

1. **각 항목 리스트**

**2. 인도 및 검사**

**“을”은 제작된 “개발 내역”에 대한 “산출물”을 “갑”이 지정한 저장 공간에 저장 후 통보한다.**

**“갑”은 인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“을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 이때 검수 방법은 다음의 제 9조에 의거 시행한다.**

**3. 제작 완료 확인**

**“을”이 인도한 “산출물”이 이상 없음을 “갑”이 확인하였을 때에 “3D 그래픽”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.**

**제9조(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)**

**1. “을”이 “3D 그래픽”을 제작 완료 하였을 때에는 이를 “갑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**

**2. “갑”과 “을”은 “3D 그래픽”의 “산출물”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한다. 검수 후 “갑”이 서면에 의해 검수 완료를 통지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(다만, 이 경우에도 추후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“을”은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.)**

**3. “을”은 최종검수를 완료한날로부터 10 개월간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 발생에 대하여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**

**제 10 조 (권리와 의무 및 양도)**

**1. “을”은 “3D 그래픽”의 제작과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한다.**

**2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간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**

**3. “을”은 “갑”이 중간 결과 보고를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시**

**중간 결과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**

**4. “을”은 “효력 발생일”로부터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킬 수 없다. 다만, “갑”의 서면 승낙이나 사전 동의를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**

**5. “을”은 최종 “산출물” 또는 “갑”의 중간 검수를 마친 용역 “산출물”을 제 3자에게 매각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목적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.**

**제 11 조 (지적재산의 소유권)**

**1. “본 계약”에 의해 개발된 모든 이미지, 지적재산 등 모든 개발 결과물 및 이에 대한 권리는 법에 따라 등록 되었든 되지 않았든 모두 “갑”의 소유이며, “갑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“을”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지분을 주장하지 않는다.**

**2. ”본 계약”에서 별도로 언급이 없는 한, “을”은 개발된 모든 사항을 “갑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자료를 복사, 복제, 수정, 번역, 파생작품 제작, 발췌할 수 없다.**

**제 12 조(자료의 보관․관리)**

**“을”은 본 건 업무에 관해서 “갑”으로부터 제공된 서류, 도면, 정보, 데이터 기타 모든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․관리하고 사전에 “갑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**

**제 13조(비밀유지)**

**① “을”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“본 계약”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.**

**② “을”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“을”의 종업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앞 항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.**

**제 14 조 (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)**

**1. “갑” 은 다음 각호의 경우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협력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, “을”이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“갑”이 판단한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“본 계약” 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다.**

1. **“갑”의 시정 요구를 “을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**
2. **“을”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경우**
3. **“을”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해산, 청산,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을 때**

**2. “갑”의 협정 위반에 대한 “을”의 시정 요구를 “갑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“본 계약”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**

**3. 위 1.2.항의 해지 효력은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서면으로 해지 통보를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**

**4. “갑”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, “갑”은 총 계약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**

**“을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**

**5. “을”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, “을”은 총 계약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**

**“갑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**

**제 15 조 (계약의 해석 및 분쟁관할)**

**1. “본 계약”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 및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그 내용의 수정 및 첨삭을 결정한다.**

**2. “본 계약”과 관련하거나 혹은 쌍방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러한 이견이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없을 경우 “갑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**

**제 16 조 (신의 성실 및 협조)**

**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은 신의와 성실로써 “본 계약”을 수행해야 하며, “갑”과 “을”은 “본 계약”에 의한 계약 기간 및 제작 기간 동안 원활한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.**

**제 17 조 (계약의 효력)**

**“본 계약”은 “갑”과 “을” 이 쌍방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.**

**제 18 조 (계약서 보관)**

**“본 계약”을 상호 자유로운 의지로 완전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,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“갑”과 “을”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**

**2015. 11. 12**

**갑   주 소 :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지곡연구동**

**상 호 : 파이온**

**대표자 : 파이온 (인)**

**을   주 소 :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기숙사 8동 105호**

**상 호 : 박종수**

**대표자 : 박종수 (인)**